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하 "간접비 계상기준"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 작성을 위한 세부지침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이하 구분회계 지출내역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분회계"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를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구분회계 단위"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를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다만,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이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기타사업 구분회계 단위: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가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말한다.
3. "예산회계 단위"란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의 예산서상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한 단위를 말한다.
4. "개별비"란 구분회계 단위에 직접 추적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5. "공통비"란 구분회계 단위에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제2장 구분회계 기준

제4조(구분회계의 원칙) ① 구분회계는 객관성, 계속성 및 비교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② 구분회계 단위와 예산회계 단위를 일치하여 간접비에 대한 계획, 통제 및 실적관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간접비는 전표 작성 시부터 구분회계 단위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장부(전산처리부를 포함한다)에 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비로 발생하는 항목은 전표 작성 시부터 구분하여 별도의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결산조정에서 전표를 입력하더라도 전표 작성 시부터 별도의 장부에 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개별비 집계) ① 개별비는 구분회계 단위 별로 발생원가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 구분회계 단위별로 집계된 원가는 원천증거서류에 의하여 파악 가능하여야 한다.

제6조(공통비 배부) ① 공통비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구개발에 대한 기여도, 사업비 발생형태의 인과관계성을 고려한 합리적 배부기준 및 배부단계를 거쳐 구분되어야 한다.

② 공통비의 배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일반요건 및 각 배부기준별 일반적인 적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객관성: 배부기준은 매년 또는 연중 일정하게 발생하거나 투입되어야 하며, 실적자료에 기초를 두거나 검증된 표준정보이어야 한다.
2. 계속성: 배부기준은 매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다.
3.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 배부기준은 적용되는 비목과 확인될 수 있을 정도의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인과관계에 따른 배부기준이란 특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특정원가가 발생할 때, 그 특정활동과 특정원가 사이의 관계에 따라 특정원가를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효익관계에 따른 배부기준이란 각 원가대상이 공통비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통비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원가와 원가대상간의 인과관계나 효익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연구수익 등)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등 기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원가를 배분할 수 있으나 원가의 발생과 최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배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비의 분류기준) ①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이 제2조제2호가목의 간접비계정으로 이체된 간접비수익 재원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한 간접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로 분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간접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와 기타사업 구분회계 단위의 구분이 곤란한 간접비는 기타사업 구분회계 단위로 분류한다.

제3장 구분회계 지출내역서의 작성

제8조(구분회계 지출내역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구분회계 지출내역서의 계정과목별 금액은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결산서(주석 또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상의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대상기관은 공통비의 배부기준 등 지출내역서 작성방법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분회계 지출내역서의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작성대상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구분회계 지출내역서는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명자료의 작성) ①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은 구분회계 지출내역서와 함께 지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명자료에는 개별비와 공통비의 구분방법, 공통비의 배부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구분회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장 자료의 품질 관리 등

제10조(구분회계 정보의 확인·검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구분회계 지출내역서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행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회계연도 구분회계 지출내역서 작성 시에는 예산 편성 및 전표 작성단계에서부터 구분회계 단위별로 간접비를 구분하지 않고, 결산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구분회계 단위로 구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국가연구 개발사업	기타사업	계	국가연구 개발사업	기타사업	계
I. 기초 간접비 재원 잔액						
II. 간접비 수익(간접비계정 이체액)						
III. 간접비 지출내역						
1. 인력지원비						
1) 인건비						
2) 연구개발능력성과급						
2.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 연구실 안전관리비						
4) 연구보안관리비						
5) 연구윤리활동비						
6) 연구개발준비금						
7) 대학 연구활동지원금						
8)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3.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4.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1) 간접비 재원 취득자산						
IV.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V. 기말 간접비 재원 잔액(I + II - III - IV)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확정시 상기 지출내역 계정명 변경 가능

[별표 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I. 기초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자원 잔액		
II.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수입 (산학협력단 전입금 또는 산학협력단회계 전입금)		
III.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		
1. 인력지원비		
1) 인건비		
2) 연구개발능력성성과급		
2.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4) 연구보안관리비		
5) 연구윤리활동비		
6) 연구개발준비금		
7) 대학 연구활동지원금		
8)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3.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4. 학교회계전출금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1) 학교회계전출금 자원 취득 자산		
IV. 기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자원 잔액(I+II-III)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확정시 상기 지출내역 계정명 변경 가능